

영등포구의회  
제135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안)』

# 檢 討 報 告 書

2008. 3. 31.



行 政 委 員 會

( 專 門 委 員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안)』

# 檢 討 報 告 書

전문위원 김병욱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

- 우리 구 구정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내·외국인 또는 방문하는 외빈에 대하여 명예구민증 수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외교류협력 및 우호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 ■ 제정내용

- 수여대상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함  
(안 제2조)
  - 타시·군·구에 거주하는 자 중 우리구 구정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
  - 우리구에 계속하여 3년 이상 거주하고 구정발전을 위하여 교류 증진, 통상협력 또는 구민과의 우호증진 등에 공헌한 외국인
  - 우리구를 방문하는 외빈 또는 현지 외국인 중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후보자 추천(안 제3조)

- 공공단체의 장, 10인이상의 회원을 가진 사회단체의 장 또는 10인이상의 구민이 추천

● 수여대상자 결정(안 제4조)

- 명예구민증 수여대상은 명예구민증수여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함. (다만, 제2조제3호의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음)

● 수여방법 및 부상(안 제5조)

- 명예 구민증 수여대상자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는 명예구민증과 명예구민 증명서를 수여한다.

● 명예구민 관리(안 제6조)

- 명예구민증에 대하여는 구민에 준하는 행정상 혜택 부여
- 구정관련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거나 구정 참여기회 부여

● 명예구민증수여심사위원회(안 제8조)

- 위원회의 임무
  - 수여의 적격성 심사
  - 수여의 취소여부 심의
- 위원회의 구성
  -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포함하여 7인 이내
- 위원의 자격
  - 영등포구의회 의원
  - 영등포구 국장급 이상 공무원
  - 기타 우리 구정과 국제교류분야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 위원회의 회의(안 제9조)

-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함.

## 검토의견

- 본 조례 제정은 구정 발전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내·외국인과 우리구를 방문하는 외빈에게 명예구민증을 수여할 수 있도록 하여 대외교류협력과 우호증진, 그리고 우리구의 위상을 높이려는 것으로서
- 명예구민증 수여는 당해 자치단체의 행정발전에 크게 기여하거나 깊은 연고가 있는 외국인 등에게 그 공적을 칭송하고 공동체의식을 갖자는 의미로 수여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이나 기타 법령에 명문 규정은 없으나,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여러 나라에서 외교상 또는 관례상 널리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 우리나라 기초자치단체에서도 관심과 제도시행이 늘어나고 있으며,
- 우리구에서는 2007. 9. 27 제정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거주 외국인 지원 조례」 제21조에 거주외국인 지원업무에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외국인에 대하여 명예구민으로 예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세계 명품도시를 지향하고 있는 실정으므로 조례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8. 3. 31.

보고자 : 김 병 욱

#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 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제21조(명예구민) 구청장은 거주외국인지원업무에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외국인에 대하여 명예구민으로 예우할 수 있다.